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 월 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방식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예정임(입법예고 중,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제2026-0402호)에 따라, 공개방식의 선택 방법과 변경신청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등록 신청 시 활용 정보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대체 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명” 관련 용어의 정비(안 제3조 및 제5조)

- 1) 「저작권법」의 용어 체계에 맞추어 시행규칙에서 “성명”으로 서로 다르게 쓰이는 용어를 “실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통일함.

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제출 근거 마련 등(안 제6조제2항 제9호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등)

- 1)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이 늘어남에 따라, 등록 심사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
- 2)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등록을 신청하

는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서식을 신설함.

다. 미성년자의 등록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및 대체 서류 마련
(안 제6조제2항제10호 신설)

- 1) 미성년자가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행방불명, 친권의 상실·정
지·제한, 보호시설 양육, 가정위탁보호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로 갈
음할 수 있도록 함.

라. 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방식 선택 및 변경신청 절차 마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별지 제32호의3서식 신설 등)

- 1)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명세서에 실명만 표시, 실명과 이명을 함께
표시, 성(姓)만 표시하고 이명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
하도록 함.
- 2) 공개방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신청서에 본인 확인 서류 등을 첨
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그 밖의 정비사항

- 1) 저작물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 저작물 등록신청 취하 시 구
비서류로 모바일 신분증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24호의2
서식, 안 별지 제34호서식)
- 2)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 시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에 사용기종의

세부 분류 목록((매킨토시, 모바일, PDA 등)를 삭제함(안 별지 제4호의2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성명 또는 명칭”을 “실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성명(실명 또는 이명)”을 “실명 또는 이명”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성명”을 “실명 또는 이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성명”을 “실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10.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미성년자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서 및 각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실증빙서류 (행방불명 신고 접수증, 가출신고 접수증, 수감증명서 등)

나. 「민법」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로 등록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친권상실·정지·제한 선고에 관한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동의자가 미성년자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아동복지시설 등 인가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인가된 보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할 시·군·구청장 발행), 해당 시설에서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원증명서 등),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가정위탁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을 신청할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류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방식 선택)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저작자 등의 실명에 관한 사항의 공개방식을 선택하려는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실명만 표시
2. 실명과 이명을 함께 표시
3. 실명 중 성(姓)만 표시하고, 이명을 함께 표시

제8조의3(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방식 변경신청) ①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개방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저작자 등의 공개방식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공개방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공개방식의 구분은 제8조의2 각 호에 따른다.

별표 제6호 중 “신청 및”을 “신청,”으로, “변경신고”를 “변경신고 및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저작자 등의 공개방식 변경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나목 중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을 “실명 또는 이명”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나목 중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아호·약

칭 등”을 “실명 또는 이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10.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제6조제2항 제10호 각 목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10.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제6조제2항 제10호 각 목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11.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제6조제2항 제10호 각 목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개작권”을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11.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제6조제2항 제10호 각 목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별지 제7호서식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제6조제2항 제10호 각 목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제6조제2항 제10호 각 목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제6조제2항

제10호 각 목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제1호 중 “사본,”을 “사본(모바일 신분증 포함),”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3호 중 “성명(법인명)”을 “실명(이명)”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제3호 중 “NAME OF AUTHOR(CORPORATE NAME)”를 “AUTHOR’S REAL NAME(PSEUDONYM)”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3호 중 “성명(법인명)”을 “실명(이명)”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제3호 중 “NAME OF PERSON(CORPORATE NAME)”을 “REAL NAME(PSEUDONYM)”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2호 중 “성명(법인명)”을 “실명(이명)”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제2호 중 “NAME OF DATABASE PRODUCER(CORPORATE NAME)”를 “DATABASE PRODUCER’S REAL NAME(PSEUDONYM)”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제1호 중 “사본,”을 “사본(모바일 신분증 포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⑥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① ~ ② 제호 및 종류: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고,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해서만 기재합니다.
- ③ 등록하려는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예'를 선택한 경우, 첨부서류 9.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서식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를 첨부합니다.
- ④ ~ ⑤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 ⑥ 내용: 등록하려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⑧ ~ ⑨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 그 원작이 되는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 실명을 기재합니다.
- ⑩ 권리에 대한 지분: 공동저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 ⑪ 창작연월일: 저작물이 완성된 연월일을 기재하되, 연도 또는 월까지만 기재해도 됩니다.
- ⑫ ~ ⑬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⑭ 실명: 저작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을 등록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기재합니다.
- ⑮ 실명 또는 이명의 공개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공보 발행 또는 게재 및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 공개되는 실명 또는 이명의 표시 방식을 선택합니다.(표시방식과 관계없이, 신청 접수 시 실명인증 절차는 필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예시)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술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USB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 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처,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USB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USB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USB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仪,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약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 기존 기재하지 않음 등록 물인 경우	실 연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① 제호(제목)					
	② 종 류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③ 실연의 구성원	명	④ 장 소		⑤ 실연의 크기	분
	⑥ 복제물 형 태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⑦ 복제물 수 량	
	⑧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실연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 사 항	⑩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실연자인 경우에만 기재			
	⑪ 실 연	실연연월일				
	⑫ 고정된 경우	고정 매체		☐ 음반 ☐ 영상		
		레이블의 명칭				
		맨 처음 고정된 날		맨 처음 고정된 국가		
		제작자 실명(법인명)		국 적		
	⑬ 송신된 경우 ※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 제외	방송프로그램의 제명		실연이 송신된 날		
		방송사업자 실명(법인명)		국 적		
		방송설비의 소재지		☐ 대한민국 ☐ 기타()		
	⑭ 실연 시 표시한 실연자 실명(이명)					
⑮ 공동실연	(독창자·독주자) 실 명(이 명)		(독창자·독주자) 국 적			
⑯ 실명·이명의 공개 방식 ※ 위 ⑭·⑮항목에서 이명을 작성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 실명만 표시 ※ 예시: 홍길동 ☐ 실명과 이명을 함께 표시 ※ 예시: 홍길동(김개똥) ☐ 실명 중 성(姓)만 표시하고, 이명을 함께 표시 ※ 예시: 홍**(김개똥)					
	※ 위 선택은 등록공보 발행 또는 게재 및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 공개되는 실명·이명 표시 방식에 한하며, 등록부 원부에는 신청 시 기재한 실명이 그대로 기록·보존됩니다.					
⑰ 피상속인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⑧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실연의 구성원 : 실연을 행한 구성원의 수를 기재합니다.

④ 장소 : 실연이 행하여진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⑤ 실연의 크기 : 실연이 행하여지는 데 소요된 시간을 기재합니다.

⑥ ~ ⑦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⑧ 실연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실연의 개요 및 특징, 실연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실연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⑩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실연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⑪ : 실연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⑫ ~ ⑬ : ‘고정’ 또는 ‘송신’ 중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각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 실연 시 표시한 실명(이명)을 기재합니다.

⑮ : 공동 실연의 경우 선택하고 해당 독창자나 독주자의 실명과 국적을 기재합니다.

⑯ : 실명 또는 이명의 공개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공보 발행 또는 게재 및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 공개되는 실명 또는 이명의 표시 방식을 선택합니다.(표시 방식과 관계없이, 신청 접수 시 실명인증 절차는 필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실연자의 실연을 등록하는 등록의 경우 기재합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③ 복제물 수 량		
	④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기존 등록물인 경우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⑥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 제작 ☐ 갱신			⑦ 연월일					
	공표			⑧ 공표연월일			⑨ 공표국가		
				⑩ 공표방법			☐ 출판 ☐ 복제·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⑪ 공표매체정보 ※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등					
				⑫ 공표 시 표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실명(이명)					
	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실 명 (법인명)		한글) 한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아래에 V표를 하고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과 같음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⑭ 실명·이명의 공개 방식			☐ 실명만 표시 ☐ 실명과 이명을 함께 표시 ☐ 실명 중 성(姓)만 표시하고, 이명을 함께 표시			※ 예시:홍길동 ※ 예시:홍길동(김개똥) ※ 예시:홍**(김개똥)			
※ 위 ⑫ 항목에서 이명을 작성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 위 선택은 등록공보 발행 또는 게재 및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 공개되는 실명·이명 표시 방식에 한하며, 등록부 원부에는 신청 시 기재한 실명이 그대로 기록·보존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④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제호(제목)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 ③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및 특징,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⑧ ~ ⑫ 공표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⑬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기재합니다.

⑭ 실명 또는 이명의 공개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공보 발행 또는 게재 및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 공개되는 실명 또는 이명의 표시 방식을 선택합니다.(표시방식과 관계없이, 신청 접수 시 실명인증 절차는 필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 저작인접권 ☐ 설정
☐ 저작인접권의 ☐ 양도
배타적발행권 ☐ 처분제한 **등록신청서**
☐ 질권설정 등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저 작 인 접 목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여러 건 등록: 총 건)			
	② 종 류	☐ 실연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음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 기타())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신 청 인	등 록 권 리 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등 록 의 무 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⑩ 국 적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대 리 인	⑮ 성 명 (법인명)	⑮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⑯ 주 소	⑯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뒤쪽)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5호서식의 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호서식의 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중 해당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수수료(1건)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5,000원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결정문 등)	인 터 넷: 30,000원	
	4.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	
	5. 저작인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0.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제6조제2항제10호 각 목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저작인접권: 48,240원 배타적발행권: 24,000원	

실연·음반·방송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실연	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무용, 지휘 등	Tape, CD, DVD, USB, 비디오테이프 등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Tape, CD, DVD, USB 등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USB, 비디오테이프 등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제호: 등록하려는 실연·음반·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도록 하며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애국가'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 건)

◆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되, 명세서는 실연·음반·방송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② 종류: 위 실연·음반·방송 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기재합니다.

- ③, ⑨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등록권리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 ⑤, ⑩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인접권 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별지 제20호의2서식]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저 작 물	제 호 (제 목)		종 류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산출 부분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지하며, 본 등록 신청물에 포함된 해당 부분은 등록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 부분에 관한 사항		※ 사용한 인공지능 도구명,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역할 등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 부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합니다(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에 관한 사항		※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 부분 외에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부분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과 결합·연계하여 창작적 기여를 한 사항(수정·보완, 각색, 구성·배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합니다(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이 서식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된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저작권등록부				등록번호
저작물	① 제 호(제 목)			② 종 류
	③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여부			
	④ 형태 및 수량			⑤ 창작 연월일
	⑥ 원저작물 ※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만 기재	제 호		
		저작자		
저작자	⑦ 실명(이명)	(한글) (한자) (영문)		
	⑧ 국 적		⑨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⑩ 주 소			
	⑪ 전자우편 주소		⑫ 전 화 번 호	
	⑬ 사 망 연 도			
맨처음 공표	⑭ 연 월 일		⑮ 국 가	
	⑯ 맨처음 공표후 30일내에 공표된 국가			
	⑰ 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⑱ 공표매체 정보			
⑲ 관련등록번호			⑳ 등록연월일	
등 록 의 내 용				
순위	등 록 사 항			확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뒤쪽)

○ 저작물의 내용

○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 부분에 관한 사항

○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에 관한 사항

프 로 그 램 등 록 부				
프로그램 등록번호				
프로그램의 명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여부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록연월일				
프로그램 저작자	실명(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및 국적			
	지 분			
프로그램복제물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저작권란				
순 위	사 항			
기타란				
순 위	사 항			

(뒤쪽)

○ 프로그램의 내용

○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 부분에 관한 사항

○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에 관한 사항

저 작 인 접 권 등 록 부				등록번호	
※□에는 V표를 합니다					
☐ 실연 ☐ 음반 ☐ 방송	① 제호(제목)				
	② 종 류				
	③ 고정물				
☐ 실연자 ☐ 음 반 제작자 ☐ 방 송 사업자	④ 실명(이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자우편 주 소		⑨ 전 화 번 호		
맨 처 음 ☐ 실 연 ☐ 음의 고정 ☐ 방 송	⑩ 연월일		⑪ 발행연월일		
	⑫ 장 소				
	⑬ 실연시 사용한 실연자의 이름				
⑭ 부기(실연자등의 명단)					
⑮ 관련 등록번호		⑯ 등록연월일			
등록의 내용					
순위	등록사항				확 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뒤쪽)

○ 실연, 음반, 방송의 내용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등록번호	
데이터 베이스	① 제 호(제 목)			
	② 형태 및 수량			
	③ 제작완료 연월일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	④ 실명(이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전 화 번 호	
맨 처 음 공 표	⑩ 연 월 일		⑪ 국 가	
	⑫ 맨처음 공표 후 30 일 내에 공표된 국가			
	⑬ 맨처음 공표 시 표시한 제작자 이름			
	⑭ 공표매체 정보			
⑮ 관련등록번호			⑯ 등록연월일	
등록의 내용				
순위	등 록 사 항			확인

210mmx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뒤쪽)

○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저작자 등의 공개방식 변경신청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① 등록번호					
② 등록연월일					
③ 제호(제목)					
④ 공개방식 변경 내용		☐ 실명만 표시 ☐ 실명과 이명을 함께 표시 ☐ 실명 중 성(姓)만 표시하고, 이명을 함께 표시 ※ □에는 V표를 합니다.			
신 청 인	⑤ 성 명 (법인명)	(한글) (영문)	(한자)		
	⑥ 국 적		⑦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⑩ 전자우편 주 소	
대 리 인	⑪ 성 명 (법인명)		⑫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 주 소				
	⑭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⑮ 전자우편주소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방식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사본(모바일 신분증 포함),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1건) 방문·우편: 3,000원 인 터 넷: 2,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 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 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공고의 내용)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작재산권자의 <u>성명 또는</u> <u>명칭</u> ,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 <u>실명(법인 ·</u> <u>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u> <u>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명</u> <u>(예명 · 아호 · 약칭 등을 말한</u> <u>다. 이하 같다)---</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 자의 <u>성명(실명 또는 이명)</u>	4. ----- -- <u>실명 또는 이명</u>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영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 급받은 사실을 공고하려는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73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 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 ----- ----- ----- ----- ----- ----- -----

스텝”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 6. (생략)

7.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제6조(등록신청서)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실명 또는 이명-----

3. ~ 6. (현행과 같음)

7. ----- 실명

제6조(등록신청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10.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미성년자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서 및 각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실증빙서류(행방불명 신고 접수증, 가출신고 접수증, 수감증명서 등)

나. 「민법」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신고로 등록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친권상실·정지·제한 신고에 관한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동의자가 미성년자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아동복지시설 등 인가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인가된 보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할 시·군·구청장 발행), 해당 시설에서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원증명서 등),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가정위탁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을 신청할 사유가 있

③・④ (생략)

제6조의3(이의신청서) 법 제55조 제3항 또는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신청서>

<신청서>

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류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이의신청서) -----

별지 제20호의3서식-----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 방식 선택)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저작자 등의 실명에 관한 사항의 공개방식을 선택하려는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실명만 표시

2. 실명과 이명을 함께 표시

3. 실명 중 성(姓)만 표시하고, 이명을 함께 표시

제8조의3(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 방식 변경신청) ① 영 제27조의

6제1항에 따라 공개방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저작자 등의 공개방식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공개방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공개방식의 구분은 제8조의2 각 호에 따른다.